Crowe

한울회계법인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1년 9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무 및 법률정보

- Tax Tips: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출처: 금융감독원, 2021.7.12]

▣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행 초기 3 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

1.추진 배경

☐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19 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 '18 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감리는 미실시(참고 1)

>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 ❶ **(별도 기준)** 자산 2 조원 이상('19 년), 5 천억원 이상('20 년), 1 천억원 이상('22 년), 기타('23 년)
> ❷ **(연결 기준*)** 자산 2 조원 이상('23 년), 5 천억원 이상('24 년), 기타('25 년)
>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 년씩 연기할 예정('21 년 4/4 분기)

주요 내용

☐ 이에 따라, **'19 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ㅇ기업과 감사인들은 최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주요 내용

가. 계도기간 부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 년***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겠습니다.
* 개별·별도재무제표 : 3 년간 계도위주 운영 / 연결재무제표 : 2 년간 계도위주 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

[개별·별도 재무제표]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검토	계도 위주				감사 의무화 본격 감리					
5천억원 ~ 2조원	검토		계도 위주			감사 의무화 본격 감리					
1천억원 ~ 5천억원	검토				계도 위주		감사 의무화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계도 위주		감사 의무화 본격 감리			

[연결 재무제표]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					계도 위주		감사 의무화* 본격 감리			
5천억원 ~ 2조원	-						계도 위주	감사 의무화* 본격 감리			
1천억원 ~ 5천억원	-							계도 위주	감사 의무화*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							계도 위주	감사 의무화* 본격 감리		

* '21년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

나.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운용 방향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감리 착수)❶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 재무제표 심사로 종결되는 경우 감리 미실시, **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감리 미실시

○ ❷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합니다. (참고 2)

□**(감리 범위)**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예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

□**(감리 조치)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 단계 가중**합니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

< 감사인 감리시 >

□**(감리 범위)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하고,

ㅇ**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점검
※ 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①품질관리시스템 감리 및 ②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함께 실시

□**(감리 조치)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개선권고'** 조치를 합니다.

다. 본격 감리시 감리운용 방향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감리 착수)**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합니다.
* ① '고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있으며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

□**(감리 범위)**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합니다.

ㅇ**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예 : 운영 테스트의 대상, 핵심통제의 선정기준 등)

□**(감리 조치)**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ㅇ**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

< 감사인 감리시 >

□**(감리 범위)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동일**하며,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감리 조치)**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ㅇ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기준

기대 효과

3.기대 효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안내로 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향후 계획

□금번에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참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참고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

참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ㅇ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

ㅇ '**감사**'는 내부통제 관련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 또는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

구분	검 토	감 사
검증 대상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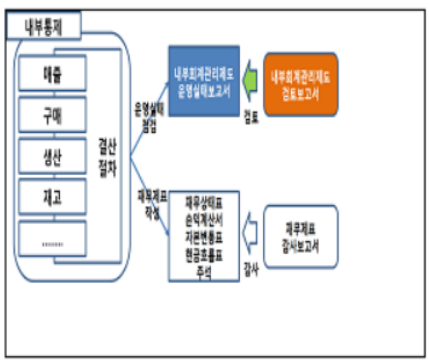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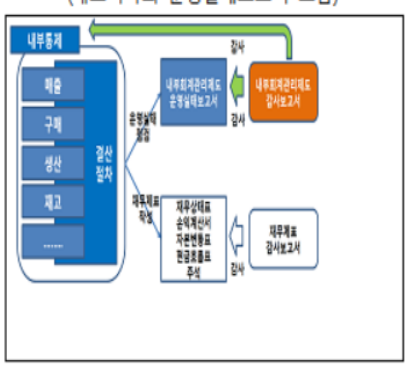
수행 절차	질문 위주 (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통제절차의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질문

참고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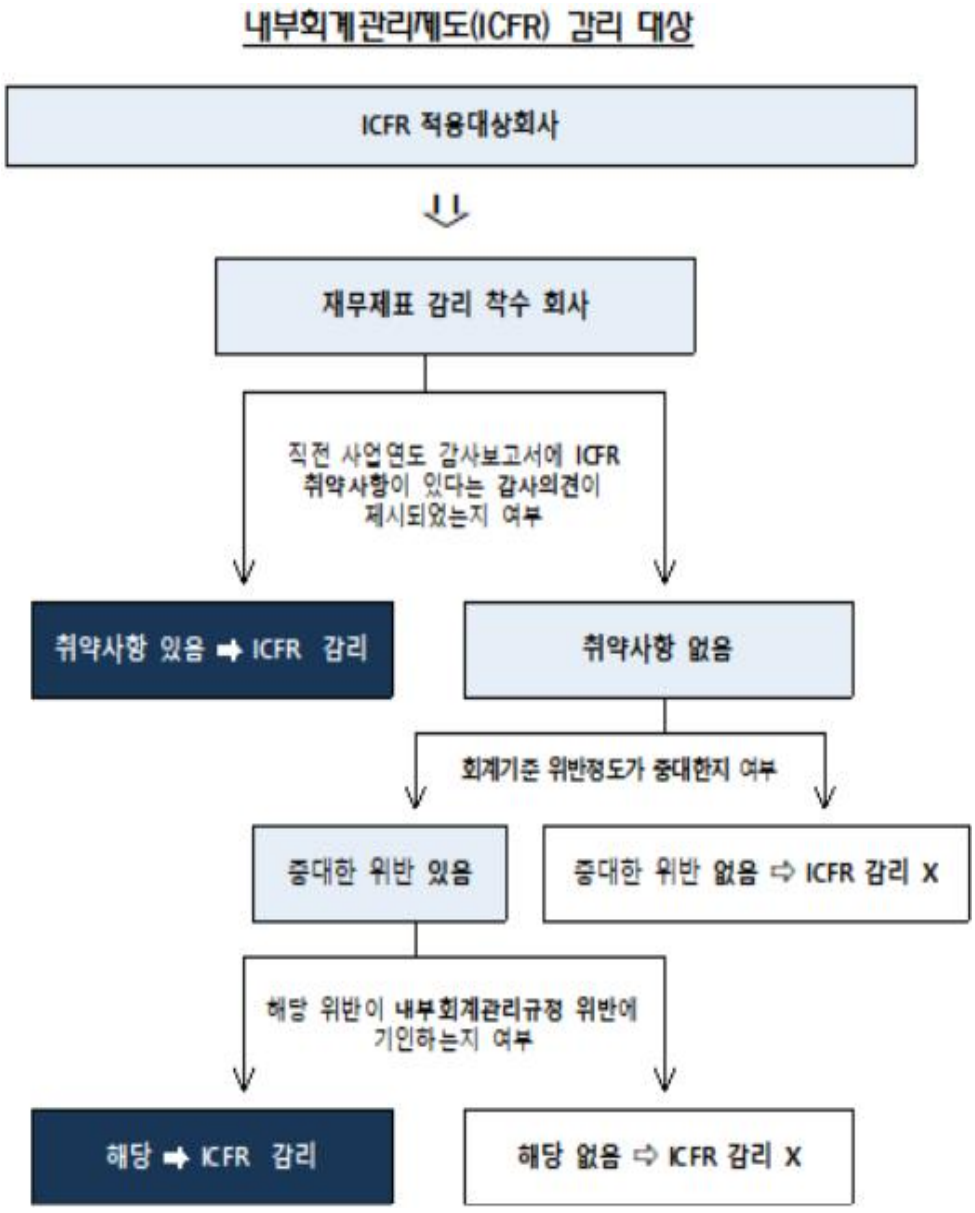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출처: 금융감독원.2021.7.14]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안 주요 내용 >

□ **코로나 19 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 년 연기합니다.**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검토 등 회계감독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개정배경

1.개정 배경

□ **코로나 19** 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 이를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주요 내용

①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안 부칙 제 3 조)

○ **(현행) 자산 2 조원 이상 상장사**는 **'22 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종속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 전체를 의미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❶ **(별도 기준)** 자산 2 조원 이상('19 년), 5 천억원 이상('20 년), 1 천억원 이상('22 년), 기타('23 년)

❷ **(연결 기준)** 자산 2 조원 이상('22 년), 5 천억원 이상('23 년), 기타('24 년)

- 자산 2 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 편**인데(평균 28 개) **코로나 19** 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163 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 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 사

○ **(개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 19** 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 년 연기***합니다.

* 자산 2 조원 이상('22 년→'23 년), 5 천억원 이상('23 년→'24 년), 기타('24 년→'25 년)

-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자산 2 조원 이상('22 년), 5 천억원 이상('23 년), 기타('24 년)**

②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등(안 제 29 조)

○ **(현행)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근거 및 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개선)**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 등이 구체화됩니다.
-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이 마련됩니다.
* 예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
-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 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차원에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결과를 감사인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③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안 제 11 조 등)

○ **(현행)**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도입('20 년 시행)되었으나, **유지요건 위반**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등록회계사 40 인 이상,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구축 등
- 현재 등록요건 유지 관련 감리는 **등록요건 위반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또한, 등록요건 유지 위반시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됩니다.
* 지정제외 점수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일정 개수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함(30 점당 기업 1 개)

④ 기타 사항

○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합니다. (안 제 28 조)
*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향후계획

3.향후 계획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4 일~8.23 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 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주요 내용

참고

참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주요 내용**

□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
*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

○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도 병행
* '20 년부터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일정 요건(외부감사법상 등록된 회계사 40 인 이상,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 자체평가기준 예시 >
- 감사업무 수임 전 회계법인의 적격성·역량 등에 대한 확인 등(품질관리기준 26)
- 감사조서 관리의 적정성(품질관리기준 45)
- 감사보고서 발행 후 점검의 충실성 등(품질관리기준 48)

□ **외부감사인의 자체평가 결과**를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

○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감리의 효율성 제고**
* 자체평가 결과,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

○ 자체평가 결과를 **품질관리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
* 직전년도에 감리를 받은 외부감사인도 감리 가능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및 외부감사의 품질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
①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감리 착수
②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③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무 및 법률정보 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정리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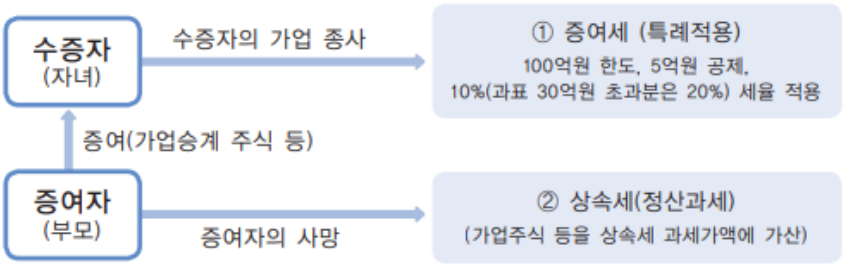

1.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③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2019.12.31. 이전 증여 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가업: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요건: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요건: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아야 합니다.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과세특례의 세부요건

① 증여세 과세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과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당해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고,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업무무관\ 자산가액}{총\ 자산가액}\right)$$

②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가업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⑥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대로 합산

⑦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⑧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 받은 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증법 §41조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사후관리

(1)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① 가업 주식의 증여 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text{※ 이자상당액} =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5}{10{,}000}$$

②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①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3)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지방세법」 제 103 조의 23 제 3 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21 지 2083, 2021.09.08)

(판단)

(가)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안분세액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위 가산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에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OOO청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03조24 제5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에만 적용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법령해석부가 2021-1143, 2021.08.31)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 외국법인이 제품을 주문하면 신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납품하고 국내사업장은 해당 제품을 장비에 장착하여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며,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함

(질의내용)
○ 사업자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하여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가공하여 외국법인에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